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에 대해 일부 변경**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1월 20일

파 주 시 장

1. 행정예고 목적

산업통상부 고시 2025-132호 및 2026-6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 안전신문고 신고 기준 변경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 요건을 갖추어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첨부된 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의 일부 변경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16조(과태료)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충전방해행위)

라.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및 제17조(과태료의 부과)

3. 행정예고 기간 : 2026. 01. 20.(화) ~ 2026. 02. 09.(월) (21일간)

4. 행정예고 방법 : 파주시청 홈페이지(www.paju.go.kr) - 정보공개 - 알림마당 - 고시/공고

5. 행정예고 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가. 시 행 일: 2026. 2. 5.(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유예기간 반영 및 변경 내용 홍보를 위해 2026. 2. 5.(목)부터 적용

나. 변경내용

- ① 완속충전구역 내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주차 가능시간 변경
(기준)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②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구역 기준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 변경
(기준)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③ 완속충전구역 내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기준시간 초과 주차 신고에 필요한 첨부 자료
(※ “바. 신고(접수) 요건” 참고)
- ④ 이중주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신고 시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 가능한 동영상 첨부

다. 신고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해당하는 충전 방해행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라. 신고방법: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① 안전신문고 앱 선택	▶	② 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	③ 불법 주정차 신고 유형 선택	▶	④ 사진 '촬영/앨범' 선택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설치】		【안전신문고→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선택→'친환 경차 충전구역'】		【사진→촬영/앨범→사진 촬영 또는 안전신문고 갤러리】
⑤ 발생지역 위치찾기	▶	⑥ 내용 입력 (추가,수정가능,900자)	▶	⑦ 휴대전화	▶	⑧ 제출
【발생지역→위치찾기 →'주소검색/키워드 검색' 후 위치 선택】		【정확한 위치, 차량번호 등 신고 내용 입력】		【자동으로 표시되는 전화번호 확인】		【'신고내용 공유 동의' 확인 후 제출】

마. 신고기한 : 첫 촬영일시 기준 24시간 이내 신고 가능

바. 신고(접수)요건 : 동일한 위치·방향에서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자료 첨부

- ①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②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인 경우 다음과 같음

구 분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PHEV)
급속 충전구역		1시간 초과 주차 시 ① 최초 촬영사진 ② 1시간 이후 촬영사진	
완속 충전 구역	기 준	14시간 초과 주차 시 ① 최초 촬영사진 ②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단속 예외 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	
	변 경	14시간 초과 주차 시 ① 최초 촬영사진 ② 5~9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 14시간 이후 촬영사진 단 ② 5~9시간 후의 촬영사진은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	7시간 초과 주차 시 ① 최초 촬영사진 ② 3~5시간 후의 촬영사진 ③ 7시간 이후 촬영사진 단 ② 3~5시간 후의 촬영사진은 동영상으로 대체 가능
		단속 예외 시설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 충전시설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14시간(PHEV는 7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차량 및 차량 번호도 포함되어야 함)	

③ 이중주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 신고 시 증빙자료(동영상) 첨부 필요

1) 최초 촬영 사진

2) 1분 이후 촬영 사진

3)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 가능한 동영상*

*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결속 확인을 위해 이중주차 차량을 미는 행위가 담긴 영상 필요

④ 위반 장소가 명확하고 최소 요구 사진 모두 차량 번호가 식별 가능하여야 함

⑤ 바닥면 표시(EV, 전기자동차 등)를 통해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주차로 해당 바닥면 표시가 보이지 않을 시 보완 사진(측면) 첨부하여 신고

※ 오염, 미·도색, 공사 등 바닥면 표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시 단속 불가

⑥ 반드시 안전신문고 앱 상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이어야 함

사. 처리불가 신고사항

① 처리불가 사항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미부과, 위반 정도 따라 계도장 발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과태료 징수 목적이 아닌 올바른 충전 문화 확산을 위함

1) 상기 신고(접수)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2) 차량번호 및 위반장소 식별이 어려운 경우

※ 신고 사진상 위치와 신고 접수된 위치가 불일치할 시 처리 불가

3) 안전신문고 앱이 아닌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접수 및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동영상인 경우

4) 한 건의 신고에 두 대 이상의 다른 차량을 동시에 신고한 경우

※ 두 대 이상의 차량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한 대씩 각각 신고

5) 증빙 사진에 촬영일시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6) 기타 불확실한 상황 또는 불명확한 자료,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제외 사항,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등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파주시가 판단하는 경우

7) 위반한 해당 차량을 동일 장소, 행위에 대해 중복 신고할 경우 최초건에 대해서만 인정

8) 최초 송달받은 시점 기준 이전 신고자료가 접수되었을 경우

※ 동일 대상에 대한 다중신고는 위반 범위에 따라 부과권자가 중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9) 사용불가(고장 및 공사 등) 충전시설에 대해 관리주체가 사전 안내 및 공지를 시행하여 일반 대중이 단속구역으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② 이중주차 및 주차선 침범

구분	이중주차	주차선 침범
대상	○ 충전·주차 중이지 않은 충전구역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① 위 행위는 충전 방해행위(진입·사용불가)가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②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 주차선 침범 - 충전구역과 접해있는 주차구역에 주차 시 충전구역 주차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비대상	○ 충전·주차 중인 충전구역을 가로막는 이중주차 사용 중인 주차구역에 이중주차를 한 경우 충전 방해행위(사용불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충전구역과 간격*을 둔 이중주차 *차량 한 대가 진출입 할 수 있을 정도 ○ 충전구역에 차량 진입이 가능할 정도의 주차선 침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8

자. 단속 예외 시설 운영

- ① 운영 근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
- ② 운영 대상 :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수량이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대수보다 많은 아파트
 - 1)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주차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2)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 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③ 운영조건 :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구역임을 시민 및 단속공무원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

차.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구비 시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시행령 제21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름)

카. 단속 대상 및 과태료 부과 금액 ※ 신고 보상 없음

구분	단속 대상	근거	과태료 부과금액
주차 위반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8항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2항	10만원
충전 방해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또는 앞이나 뒤, 양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1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2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3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6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충전구역에서 주차를 시작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전기자동차: 14시간,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 7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단속 예외 시설(건축법시행령[별표1]제1호, 제2호) : 단독·연립·다세대· 100세대 미만 아파트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7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친환경자동차 충전 :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1항 및 8 제1항제8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10만원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4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20만원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 제1항제5호 ◦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제1항	20만원

6. 과태료 처분 행정사항: 과태료 처분에 대한 감경 및 의견제출·이의 제기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함

7.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 2. 9.(월) 18:00 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① 우편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4층 에너지과

② 팩스 : 031-940-8609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 파주시청 에너지과(☎ 031-940-8498)

바. 제출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1부. 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